

05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활용

디지털 약세서리, 스마트 반지 품목분류 쟁점사례를 바탕으로





PART

05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활용

SYS
mmHg

120

DIA
mmHg

84

PULSE
/min

70

4/5 7:45AM



디지털 약세서리, 스마트 반지 품목분류 쟁점사례를 바탕으로



윤준필
지평관세법인 대표관세사

SMART RING 이미지 출처 : <https://www.amazon.com/Diyeeni-Universal-Temperature-Pedometer-Waterproof/dp/B0CY8Y3GCW?th=1>

I. 들어가는 말

미국에서 2007년 스마트폰이 첫 출시된 이후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브랜드별 스마트폰 전쟁이 시작되었다. 종전에는 휴대폰이 전화기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인터넷, 미디어, 비즈니스 등 다양한 기능이 더 해지면서 이용자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이다. 그러더니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웨어러블 디바이스’로 기술경쟁이 옮겨가며 손목시계(smart watch), 안경(smart glasses), 나아가 반지(smart ring)까지 확대되었다. 그 중에서도 스마트 반지는 가장 최근에 개발·출시된 제품으로서 품목분류에 대한 쟁점이 있어 다뤄보고자 한다.

II. 품목분류

1. 개요

스마트 반지(smart ring)이란, 사물인터넷의 일환으로써 출시되는 반지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이다. NFC나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착용된 신체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출력해낼 수 있는 모체(스마트폰)으로 송신하여 생체정보 분석을 통한 다양한 제안들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현재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국내 S사와 미국의 A사 모두 특허 등록을 하고 있으나, 이 분야에서 선두주자 격인 핀란드의 O사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 물품정보

국내 S사의 스마트 반지는 7mm의 너비와 2.6mm의 두께로 사이즈에 따라 최소 2.3g 내지 3.0g의 무게로 구분된다. 외부는 티타늄 등 금속 재질의 Housing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에는 3가지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데 광학센서로 심박수를 측정하고 수면패턴 분석을 위하여 피부 온도센서를 통해 수면 중 체온 변화 측정이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가속도 센서가 신체의 움직임과 활동량 측정이 가능하다. 전자기기이다 보니 저장 메모리(8MB)와 리튬배터리가 포함되고 스마트폰 본체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하여 블루투스 통신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완제품 구성에는 스마트 반지 외에 충전 케이스와 USB 케이블이 함께 제시된다.

신체 신호를 측정하고 해당 데이터를 스마트폰에 송신하는 기능이 주된 기능인 반면, 스마트 워치(smart watch)처럼 입출력 기능을 수행한다거나 일부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구동할 수 있지는 않으며 스피커폰 전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은 차이가 난다.



■ 물품정보

• 외관 사양

- 본체크기 : 7.0 x 2.6(mm)
- 본체무게 : 호수별 2.3 ~ 3.0(g)
- 케이스 크기 : 48.9 x 48.9 x 24.5(mm)
- 케이스 무게 : 61.3(g)

• 내부사양

- 센서 : 가속도 센서, 광학 심박 센서, 온도 센서
- 배터리 용량 : 18(mAh)
- 메모리 용량 : 8(MB)
- 네트워크 인프라 : Bluetooth

그림 1 국내 S사의 스마트 반지 'G OOO Ring'



3. 쟁점사항

(1) 수출·입신고 현황

스마트 반지의 경우 수출입 신고 통계 정보를 통해 확인한 바, 'Smart Ring'이라는 품명으로는 HS 8517.62-9030(그 밖의 무선통신용기기)이 최다 신고된 물품으로 확인되고, 글로벌 선두기업인 핀란드 O사의 'O□□□ Ring'이라는 모델명으로 조회해보면 HS 8517.62-9030(그 밖의 무선통신용기기)와 HS 9031.80-9099(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로 양분된다. 결국 무선통신용 기기에 해당하는지 기타 측정용 기기인지 여부에 대한 품목분류 쟁점 사항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림 2 스마트 반지의 수출입신고 통계 정보

• Smart ring으로 검색한 결과

순번	HSCODE	신고비율	HS 품목 해설	신성질별 분류 해설	기본 세율
1	8504.90-9000	3.92%	기타	변압기 부품	8%
2	8505.11-9000	1.96%	기타	기타 IT부품	8%
최다 신고	8517.62-9030	74.51%	그 밖의 무선통신용	유선통신기기	8%
4	8517.79-3000	11.76%	소호 제8517.62호의 것	기타 무선통신기기 부품	8%
5	8526.92-0000	3.92%	무선원격조절기기	기타 무선통신기기	8%
6	8534.00-2000	3.92%	테이프형이나 리드프레임(lead frame) 기능을 하는 회로가 형성된 것	기타 IT부품	0%

• O사의 모델명으로 검색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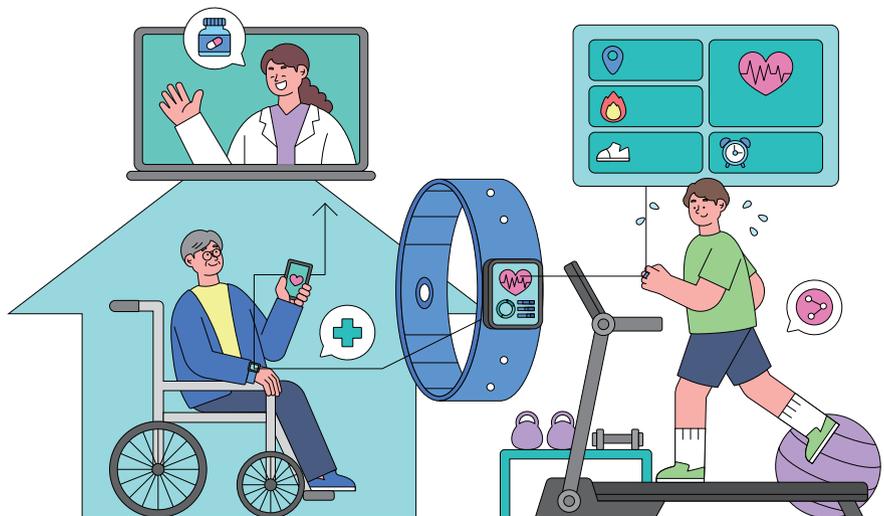
순번	HSCODE	신고비율	HS 품목 해설	신성질별 분류 해설	기본 세율
최다 신고	9031.80-9099	100%	기타	기타 계측기	8%

출처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S CODE 내비게이션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해설

① 제8517.62-9030호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8517호의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optical wave)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전신·무선전





화·무선전신·근거리와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② 제9031.80-9099호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중 제9031호에 관한 해설에는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 없다).’ 고 설명되어 있으며, 스마트 반지(smart ring)와 유사하게 신체 신호를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나 전화기능은 없는 스마트 밴드(smart band)의 경우에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제9031.90-9099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

표 1 유사제품(Smart Band)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160
시행일자	2020-03-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SMART BAND; I6HR HEART RATE SMART BAND
물품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동하여 사용하며, 스마트폰에 수신된 전화, 메시지 등을 진동이나 디스플레이를 통해 알려주거나 심박수와 걸음수 등을 측정하여 칼로리 소모량을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 -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의 신체 활동량을 확인할 수 있음 주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박수 측정센서(HRM): 심박수 측정 - 중력센서(G-Sensor): 걸음수 측정 - 알람기능 : 스마트폰에 수신된 전화 및 메시지와 사용자가 입력한 시간에 진동으로 알려주는 기능 (통화기능 및 SMS 송신 기능은 없고 수신된 전화만 확인하여 거절 할 수 있음)
결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제8479호의 진동 신호기능, 제8517호의 통신기능, 제8531호의 시각 신호기능 및 제9031호의 측정기능을 수행하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품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의 신체 활동량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조된 사실로 판단하여 볼 때,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160
결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신체 활동량을 감지하고 측정하여 운동 중의 몸상태인 생체 관련 지표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의 운동 동기를 부여하고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본 물품은 신체 단련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진동이나 디스플레이를 통해 스마트폰에 수신된 전화, 메시지 등을 알려주는 기능과 블루투스 통신기능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보조적인 기능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1.80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그룹에서 “전자식 균형장치를 부착한 기계에서 불균형으로 인한 진동을 특수감응요소로 검출하여 증폭하는 균형시험용 기계”와 “진동·팽창·충격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신체활동량을 측정하는 기능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그 밖의 측정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3) 품목분류 핵심 쟁점

스마트 반지는 해당 물품이 지닌 본질적 특성 및 주된 기능이 신체적 신호를 측정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측정된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무선방식으로 통신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따라 그 분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4. 품목분류 의견

쟁점 물품인 스마트 반지의 경우 인간의 신체 일부에 체결·장착되어 내부의 센서를 통해 신체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바이오 신호(심박수, 체온, 수면의 질, 활동량 등)를 수집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며, 측정 이후 스마트폰에서 사용자가 신체기능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스마트폰으로 해당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기능은 보조적이고 부수적인 기능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쟁점 물품의 단독 사용은 어렵고 반드시 측정된 데이터를 전송받아 분석하고 출력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필수적으로 함께 사용되어야 하며, 블루투스 기능을 통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스마트폰과 근거리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또한 유사 물품인 기타 웨어러블 기기(스마트 워치)와 비교해 볼 때 통화, 어플리케이션 구동, 디스플레이 출력 등의 기능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1.80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세(細)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예시하고 있다.
- 따라서 쟁점 물품은 신체의 바이오 신호를 측정하는 기능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그 밖의 측정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III. FTA 활용 분석

1. 개요

스마트 반지의 경우 국내 수입통관시 HS 8517.62-9030호로 분류되거나 9031.80-9099호로 분류되더라도 MFN 세율이 0%이기 때문에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 대한 실익이 없다. 미국, 중국, EU 등 주요 FTA 협정에서도 현지 MFN 세율이 0%이므로 FTA를 활용하여 얻을 실익은 크지 않다.

다만, 인도의 경우에는 스마트 반지에 해당하는 세번이 현지에서 수입시 기본 관세율이 15~20%로 적용되어 한-인도 CEPA 적용(협정세율 0%)시 실익이 큰 편이다. 또한 유의해야 할 것이 2014년 당시 인도 세관에서 스마트 워치에 대하여 관세 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의견에 반대하여 통관애로가 있었던 바 신규 발명·개발 제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품목분류 근거자료를 준비하고 원산지 판정을 명확히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주요 협정별 FTA효과

(1) 한-인도 CEPA 수출 활용시 효과

스마트 반지를 HS 9031.80으로 품목분류하여 인도 수출할 경우, 수출금액 미화 10,000달러 기준으로 한-인도 CEPA 적용 유무에 따른 관세 및 부가세 총액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2 스마트 반지 한-인도 CEPA 적용시 관세 실익

구분	관세액(US\$)	부가가치세액(US\$)
기본세율(15%)	1,500	1,150
협정세율(0%)	0	1,000
세액 차이	1,500	150
FTA 실익 합계		1,650

인도 현지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 관세율은 15%인 반면 한-인도 CEPA 협정관세를 적용할 경우 0%로 통관이 가능하여 관세의 전액은 물론 부가가치치세도 일부 경감되는 실익을 얻을 수 있다.

(2) 원산지결정기준

한-인도 CEPA 협정 제3장 '원산지 규정'에서 제3.4조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 규정에 따라 HS 제9031.80호에 해당하는 쟁점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CTSH + BD 3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이다.

(3) 원산지판정 실무

한-인도 CEPA를 적용하려면 쟁점 물품의 자재명세서 등 원산지증빙자료에 근거



한 원산지 판정시 원재료의 HS코드와 FOB 수출금액에서 비원산지재료비를 공제하는 방법(공제법)을 활용한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3 스마트 반지(smart ring)의 자재명세서(BOM)

- 물품명 : 스마트 반지
- 수출가격 : 200,000원(FOB기준)

연번	자재명	HS코드	금액(원)	원산지	입증서류
1	티타늄 Housing	8108.90	10,000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2	가속도 센서	9031.80	15,000	한국	원산지(포괄)확인서
3	온도 센서	9025.19	20,000	미상	수입신고필증
4	광학 센서	9031.49	18,000	미상	세금계산서
5	블루투스 모듈	8517.62	7,000	한국	원산지(포괄)확인서
6	리튬 배터리	8507.60	5,000	중국	원산지증명서

•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위 자재명세서에 따라 완제품 스마트 반지와 세번이 동일한 원재료인 가속도 센서의 경우에는 6단위 세번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원산지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가속도 센서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의 세번이 완제품의 세번과 달라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며 세번이 변경되지 않는 원재료는 원산지재료로 확인되어 세번변경기준은 무리없이 충족한다.

•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면 동시에 공제법에 따른 역내부가가치비율이 35% 이상이어야 최종적으로 결합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text{역내부가가치비율(\%)} = \frac{\text{FOB 수출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비}}{\text{FOB 수출가격}} \times 100$$

위 공제법 계산식을 활용하면 역내부가가치비율은 73.5%로 35% 이상을 충족한다.

IV. 맺음말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에 따라 정보통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반면에 법규나 협약, 세관의 행정관행 등은 기술의 속도만큼 따라오질 못하고 있어 현지 통관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곤 한다.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신시장 개척에 힘을 써야 할 때 품목분류 해석 이슈나 원산지 지위 불인정 등에 미리 대응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소모전을 하기 보다는 명확한 근거자료의 준비와 관세전문가를 통한 사전 대비, 관계 당국의 협조라는 삼박자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잘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